

工業所有權審判事例

国内事件

特許無効

〈大法院 第1部 判決〉(1986. 2. 11)

事件番號：85 후 77

裁判長：정 기 승

關與法官：전 상 석 · 이 회 창

1. 審判請求人(被上告人)：원농연료개발(주) (대표: 장원춘)
2. 被審判請求人(上告人)：구원상(인천 중구 항동 7-27)
3. 原審決：特許廳 1985. 6. 19字, 1983年 抗告審判(當) 第80號 審決
4. 主 文：上告를 棄却한다. 上告費用은 被審判請求人の 부담으로 한다.
5. 理 由：

被審判請求人 訴訟代理人의 上告理由 第1, 2점
을 함께 본다.

原審決은 그 理由에서 이 事件 特許 第4945號
의 特許請求 範圍의 요지는 틈밥 約 70%에 낙
엽, 瓦砾, 砂砾 約 30%을 혼합한 人造장작을
製造함에 있어서 수분함량을 10—15%가 되도록
조절하고 압출기내의 온도를 約 200—300에서
15—20초 유지하여 압출기내의 혼합물의 수분함
량이 5—7%가 되도록 조절한 후 1마력/cm²의
壓力으로 압출成型하는 製造方法이라고 함에 있
으나, 壓力單位는 단위 면적에서 수직으로 작용
하는 힘의 크기의 단위이고 마력단위는 힘이 단
위시간에 하는 일의 量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별
개 단위이며 서로 환산이 불가능하여 위 特許에
표시된 壓力單位 1마력/cm²로는 特定壓力을 산
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特許는 當業者가 용
이하게 實施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舊特許法 第
69條 第1項 第5號 및 第6號의 규정에 의하여 無
eff라고 判斷하였는 바, 이 事件 特許權의 權利
範圍에 표시된 1마력/cm²는 原審決의 실시와 같

이 壓力單位가 아니어서 그 단위로는 壓力值를
산출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原審決
의 判斷은 正當하다.

논자는 1마력/cm²는 압출기에 사용되는 모우
터의 動力과 압출판의 단위면적간의 비율을 표
시하는 것으로서 압출판의 단면적 1 당 소요되
는 모우터의 動力이 1마력이라는 뜻이므로 實施
不可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, 1마
력/cm²란 표시만으로는 소론주장과 같이 cm²가
곧 압출판단면의 단위면적을 가리킨다고 단정하
기 어렵고 發明의 상세한 설명에도 그와같은 뜻
의 설명이 없어 當業者로서는 1마력/cm²가 압출
판의 단면적당 동력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므로
용이하게 알아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.

결국 原審決에 심리미진, 이유불비와 判斷의
법리를 그릇친 위법이 있다는 논자는 理由 없으
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費用은 敗訴者の 負
擔으로 하여 關與法官의 일치된 意見으로 主文
과 같이 判決한다. <86>